|  |  |  |
| --- | --- | --- |
|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2015]10호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4년 12월 2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3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5월 5일  인민법원의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 처리를 규율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고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정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의인이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또는 재심 청구사항, 사실, 이유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의 신분증명;  (2) 관련 증거자료;  (3) 송달주소 및 연락처.  **제2조** 집행이의가 민사소송법 제225조 또는 227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내에 입안하고 입안 후 3일 내에 이의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접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불접수 판정을 내리며; 입건 후 접수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발견된 경우 신청 각하 판정을 내린다.  집행이의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3일 내에 보정할 것을 이의인에게 일괄고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의인이 불접수 판정 또는 신청각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접수조건에 부합됨을 확인한 경우 기존 판정 취소의 판정을 내리고 집행법원에 입건 또는 집행이의 심사를 명해야 한다.  **제3조** 집행법원이 집행이의를 제기받은 후 3일 내에 입건하지도 않거니와 불접수 판정을 내리지도 않거나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이의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아니할 경우 이의인은 직상급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유가 성립됨을 확인한 경우 집행법원에 3일 내에 입건하거나 15일 내에 이의에 대한 판정을 내릴 것을 명해야 한다.  **제4조** 집행사건이 지정(指定)집행, 제급(提級)집행, 위탁집행된 후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기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 당시 당해 사건의 집행을 담당한 인민법원이 심사처리하며; 지정 또는 위탁을 받은 인민법원이 기존 집행법원의 하급 인민법원인 경우에는 기존 집행법원이 심사 처리한다.  집행사건이 지정(指定))집행, 제급(提級)집행, 위탁집행된 후 외부인이 기존 집행법원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 이외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이해관계자로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집행행위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차압·압류·동결 대기를 통한 채권변제를 방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민법원의 경매 조치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공평한 경매 참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또는 현물변제 조치가 법에 위배되어 그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인민법원의 집행 협조 요구사항이 그의 협조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민법원의 법에 위배되는 집행행위가 그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 조치의 종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가 지향하는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가 집행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7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 과정 또는 보전(保全)·사전집행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차압, 압류, 동결, 경매, 매각, 현물변제, 집행 연기, 집행 중지, 집행 종결 등 집행조치;  (2) 집행의 기간, 순서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정 절차;  (3) 당사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인민법원의 기타 행위.  피집행인이 집행근거가 효력을 발생한 후의 채권 소멸, 강제집행 효력 상실 등 실체 사유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 규정 제19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집행근거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의 실체 사유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외부인이 실체 권리에 기하여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로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외부인이 실체 권리에 기하여 집행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로서 실체 권리와 무관한 집행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 및 22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출국제한 대상자가 그에 대한 출국제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국제한 결정 수령 후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기간 기존 결정의 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당사자가 공정채권문서 불집행 신청 기각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직상급 인민정부는 재심신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해야 하며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기존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리고 당해 공정채권문서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내린다. 재심 기간에 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집행이의 또는 집행재심 사건 심사 시 법에 따라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심사하도록 명한 집행이의 사건은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집행실시 사건을 처리한 인력은 관련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의 심사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고 분쟁이 큰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집행이의, 집행재심 사건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 이의인, 재심신청인이 이의, 재심 신청을 취하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14조**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이 합법적인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참가를 거절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청문회에서 퇴출함으로써 인민법원이 관련 사실을 밝힐 수 없게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의인 또는 재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5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동일 집행행위에 대해 두개 이상의 이의사유를 갖고 있으나 이의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취하한 후 또는 이의 기각 판정이 내려진 후 다시 당해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외부인이 이의 취하 후 또는 이의 기각 판정이 내려진 후 다시 동일 집행 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 재심 신청 권리와 기한을 관련 권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을 관련 권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내린 기타 판정과 결정에 대해 법률, 사법해석에 관련 권리자의 재심 신청 권리와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1)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기각 판정을 내린다.  (2)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관련 집행행위 취소 판정을 내린다.  (3) 이의가 일부 성립되는 경우 관련 집행행위 변경 판정을 내린다.  (4) 이의가 전부 또는 일부 성립되나 취소, 변경이 가능한 집행행위 내용이 없을 경우 이의 성립 또는 해당 부분의 이의 성립 판정을 내린다.  **제18조** 집행 과정에서 제3자가 피집행인 채무의 대신 변제를 서면확약함으로써 피집행인으로 추가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당사자간에 서로 만기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집행인이 상계를 청구하였으며 상계를 청구한 채무가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상계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인정하는 채무;  (2) 피집행인이 부담한 채무의 목적물과 종류, 품질이 동일한 채무.  **제20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피집행인이 집행 목적물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주택이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피집행인의 부양의무 대상자 명의로 된 생활 유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타 주택이 있을 경우;  (2) 효력을 발생한 후 피집행인이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된 기타 주택을 양도한 경우;  (3) 집행신청인이 현지 저소득임대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피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거주주택을 제공하였거나 현지 주택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당해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5년~8년간의 임대료 공제를 동의한 경우.  집행근거에 의해 피집행인의 거주주택 인도 의무가 확정되었고 집행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인이 당해 주택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유지 필수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청구한 경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경매 입찰자 간, 경매 입찰자와 경매기구 간에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경매 입찰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2) 매수인이 법률에 규정된 경매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불법으로 경매 입찰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거나 경매 입찰자의 경매 입찰 조건에 차별을 둔 경우;  (4)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고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경매 절차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당사자 또는 경매 입찰자의 이익을 해하는 기타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매각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2조** 공증채권문서가 주채무와 담보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하고; 주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였고 담보채무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채무 집행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담보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였고 주채무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한 경우 주채무 집행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담보채무 집행 신청이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된 후 피집행인이 담보계약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공정재권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직상급 인민법원은 이의판정 불복에 따른 재심 신청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이의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적용한 법률이 정확함에 따라 그 결과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재심 신청 기각 판정을 내리고 이의판정을 유지한다.  (2) 이의판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그 결과를 시정해야 하는 경우 이의판정 취소 또는 변경 판정을 내린다.  (3) 이의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명하거나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한 후 상응하는 판정을 내린다.  (4) 이의판정에서 이의청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정절차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명한다.  (5) 이의판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처리해야 하는 이의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심사처리한 경우 이의판정 취소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이의판정을 내린 인민법원으로 반송하여 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명한다.  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반송되어 다시 심사하거나 다시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판정 취소 또는 변경 판정이 내려지고 집행행위의 취소,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이와 동시에 당해 판정에 의해 유지된 집행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반송된 사건을 다시 심사하여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은 재심 후 사건을 다시 기존 인민법원으로 반송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외부인이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외부인이 권리자인지 여부;  (2) 당해 권리의 합법성과 진실성;  (3) 당해 권리의 집행 배제 가능성.  **제25조**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외부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등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등기하지 않은 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 토지사용권등기부, 건설공사규획허가, 시공허가 등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 등기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특정 동산의 경우 관련 관리부서의 등기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등기하지 않은 특정 동산과 기타 동산의 경우 실제 점유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3) 은행 예금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유가증권의 경우 금융기관 및 등기결산기구에 등기된 계좌명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유가증권이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갖춘 신탁기구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구에 등기된 실제 투자인의 계좌명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4) 지분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된 정보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5) 기타 재산과 권리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등기기구의 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등 재산소유권 또는 권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외부인이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률문서에서 인정한 집행 목적물의 권리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이 차압, 압류, 동결되기 전에 내려진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당해 법률문서가 외부인과 피집행인 간의 소유권 분쟁 및 임대·대여·보관 등 재산 소유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 분쟁에 대해 내려진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거나 그에게 집행 목적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 재결이고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해야 한다.  (2) 당해 법률문서가 제(1)호에서 언급한 계약 분쟁 이외의 외부인과 피집행인 간의 채권분쟁에 대해 내려진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외부인에게 귀속시키거나 그에게 집행 목적물을 인도,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 재결인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3) 당해 법률문서가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경매·매각거래 성립 판정이거나 현물변제 판정이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해야 한다.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집행 목적물이 차압, 압류, 동결된 후 내려인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를 근거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비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외부인이 별도 사건의 확정된 법률문서를 근거로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하였고 당해 법률문서에서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다르게 확인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기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외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집행신청인 또는 외부인이 인민법원이 본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대한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집행신청인이 집행 목적물에 대해 법에 따라 외부인의 담보물권 등을 대항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외부인이 제기한 집행이의 배제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8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피집행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의를 지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3) 대금이 이미 전액 지급되었거나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4)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명의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제29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집행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개발기업 명의로 된 분양주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며 그 권리를 배제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의를 지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되기 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매한 분양주택을 거주에 사용하고 있고 매수인의 명의로 된 기타 거주주택이 없다.  (3) 이미 지급한 대금이 계약에 약정한 총 대금의 50%를 초과한다.  **제30조** 금전채권 집행 과정에서 물권예고등기가 이루어진 차압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이 처분정지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하며; 물권등기 조건에 부합되어 양수인이 집행이의 배제를 제기한 경우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1조**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 피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수인의 점유 금지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차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인민법원은 임차인의 청구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피집행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피집행 부동산을 임차했거나 임차료 지급 증거를 위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제기한 점유 금지 청구사항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가 종결된 집행이의 및 집행재심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감독 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  法释〔2015〕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4年12月2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3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5月5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5月5日  为了规范人民法院办理执行异议和复议案件，维护当事人、利害关系人和案外人的合法权益，根据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结合人民法院执行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异议人提出执行异议或者复议申请人申请复议，应当向人民法院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载明具体的异议或者复议请求、事实、理由等内容，并附下列材料：  （一）异议人或者复议申请人的身份证明；  （二）相关证据材料；  （三）送达地址和联系方式。  **第二条** 执行异议符合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或者第二百二十七条规定条件的，人民法院应当在三日内立案，并在立案后三日内通知异议人和相关当事人。不符合受理条件的，裁定不予受理；立案后发现不符合受理条件的，裁定驳回申请。  执行异议申请材料不齐备的，人民法院应当一次性告知异议人在三日内补足，逾期未补足的，不予受理。  异议人对不予受理或者驳回申请裁定不服的，可以自裁定送达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审查后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裁定撤销原裁定，指令执行法院立案或者对执行异议进行审查。  **第三条** 执行法院收到执行异议后三日内既不立案又不作出不予受理裁定，或者受理后无正当理由超过法定期限不作出异议裁定的，异议人可以向上一级人民法院提出异议。上一级人民法院审查后认为理由成立的，应当指令执行法院在三日内立案或者在十五日内作出异议裁定。  **第四条** 执行案件被指定执行、提级执行、委托执行后，当事人、利害关系人对原执行法院的执行行为提出异议的，由提出异议时负责该案件执行的人民法院审查处理;受指定或者受委托的人民法院是原执行法院的下级人民法院的，仍由原执行法院审查处理。  执行案件被指定执行、提级执行、委托执行后，案外人对原执行法院的执行标的提出异议的，参照前款规定处理。  **第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以外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可以作为利害关系人提出执行行为异议：  （一）认为人民法院的执行行为违法，妨碍其轮候查封、扣押、冻结的债权受偿的；  （二）认为人民法院的拍卖措施违法，妨碍其参与公平竞价的；  （三）认为人民法院的拍卖、变卖或者以物抵债措施违法，侵害其对执行标的的优先购买权的；  （四）认为人民法院要求协助执行的事项超出其协助范围或者违反法律规定的；  （五）认为其他合法权益受到人民法院违法执行行为侵害的。  **第六条** 当事人、利害关系人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提出异议的，应当在执行程序终结之前提出，但对终结执行措施提出异议的除外。  案外人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规定提出异议的，应当在异议指向的执行标的执行终结之前提出；执行标的由当事人受让的，应当在执行程序终结之前提出。  **第七条** 当事人、利害关系人认为执行过程中或者执行保全、先予执行裁定过程中的下列行为违法提出异议的，人民法院应当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进行审查：  （一）查封、扣押、冻结、拍卖、变卖、以物抵债、暂缓执行、中止执行、终结执行等执行措施；  （二）执行的期间、顺序等应当遵守的法定程序；  （三）人民法院作出的侵害当事人、利害关系人合法权益的其他行为。  被执行人以债权消灭、丧失强制执行效力等执行依据生效之后的实体事由提出排除执行异议的，人民法院应当参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进行审查。  除本规定第十九条规定的情形外，被执行人以执行依据生效之前的实体事由提出排除执行异议的，人民法院应当告知其依法申请再审或者通过其他程序解决。  **第八条** 案外人基于实体权利既对执行标的提出排除执行异议又作为利害关系人提出执行行为异议的，人民法院应当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规定进行审查。  案外人既基于实体权利对执行标的提出排除执行异议又作为利害关系人提出与实体权利无关的执行行为异议的，人民法院应当分别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和第二百二十五条规定进行审查。  **第九条** 被限制出境的人认为对其限制出境错误的，可以自收到限制出境决定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十五日内作出决定。复议期间，不停止原决定的执行。  **第十条** 当事人不服驳回不予执行公证债权文书申请的裁定的，可以自收到裁定之日起十日内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复议。上一级人民法院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三十日内审查，理由成立的，裁定撤销原裁定，不予执行该公证债权文书；理由不成立的，裁定驳回复议申请。复议期间，不停止执行。  **第十一条** 人民法院审查执行异议或者复议案件，应当依法组成合议庭。  指令重新审查的执行异议案件，应当另行组成合议庭。  办理执行实施案件的人员不得参与相关执行异议和复议案件的审查。  **第十二条** 人民法院对执行异议和复议案件实行书面审查。案情复杂、争议较大的，应当进行听证。  **第十三条** 执行异议、复议案件审查期间，异议人、复议申请人申请撤回异议、复议申请的，是否准许由人民法院裁定。  **第十四条** 异议人或者复议申请人经合法传唤，无正当理由拒不参加听证，或者未经法庭许可中途退出听证，致使人民法院无法查清相关事实的，由其自行承担不利后果。  **第十五条** 当事人、利害关系人对同一执行行为有多个异议事由，但未在异议审查过程中一并提出，撤回异议或者被裁定驳回异议后，再次就该执行行为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受理。  案外人撤回异议或者被裁定驳回异议后，再次就同一执行标的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受理。  **第十六条** 人民法院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作出裁定时，应当告知相关权利人申请复议的权利和期限。  人民法院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规定作出裁定时，应当告知相关权利人提起执行异议之诉的权利和期限。  人民法院作出其他裁定和决定时，法律、司法解释规定了相关权利人申请复议的权利和期限的，应当进行告知。  **第十七条** 人民法院对执行行为异议，应当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异议不成立的，裁定驳回异议；  （二）异议成立的，裁定撤销相关执行行为；  （三）异议部分成立的，裁定变更相关执行行为；  （四）异议成立或者部分成立，但执行行为无撤销、变更内容的，裁定异议成立或者相应部分异议成立。  **第十八条** 执行过程中，第三人因书面承诺自愿代被执行人偿还债务而被追加为被执行人后，无正当理由反悔并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九条** 当事人互负到期债务，被执行人请求抵销，请求抵销的债务符合下列情形的，除依照法律规定或者按照债务性质不得抵销的以外，人民法院应予支持：  （一）已经生效法律文书确定或者经申请执行人认可；  （二）与被执行人所负债务的标的物种类、品质相同。  **第二十条** 金钱债权执行中，符合下列情形之一，被执行人以执行标的系本人及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居住房屋为由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对被执行人有扶养义务的人名下有其他能够维持生活必需的居住房屋的；  （二）执行依据生效后，被执行人为逃避债务转让其名下其他房屋的；  （三）申请执行人按照当地廉租住房保障面积标准为被执行人及所扶养家属提供居住房屋，或者同意参照当地房屋租赁市场平均租金标准从该房屋的变价款中扣除五至八年租金的。  执行依据确定被执行人交付居住的房屋，自执行通知送达之日起，已经给予三个月的宽限期，被执行人以该房屋系本人及所扶养家属维持生活的必需品为由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一条** 当事人、利害关系人提出异议请求撤销拍卖，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竞买人之间、竞买人与拍卖机构之间恶意串通，损害当事人或者其他竞买人利益的；  （二）买受人不具备法律规定的竞买资格的；  （三）违法限制竞买人参加竞买或者对不同的竞买人规定不同竞买条件的；  （四）未按照法律、司法解释的规定对拍卖标的物进行公告的；  （五）其他严重违反拍卖程序且损害当事人或者竞买人利益的情形。  当事人、利害关系人请求撤销变卖的，参照前款规定处理。  **第二十二条** 公证债权文书对主债务和担保债务同时赋予强制执行效力的，人民法院应予执行；仅对主债务赋予强制执行效力未涉及担保债务的，对担保债务的执行申请不予受理；仅对担保债务赋予强制执行效力未涉及主债务的，对主债务的执行申请不予受理。  人民法院受理担保债务的执行申请后，被执行人仅以担保合同不属于赋予强制执行效力的公证债权文书范围为由申请不予执行的，不予支持。  **第二十三条** 上一级人民法院对不服异议裁定的复议申请审查后，应当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异议裁定认定事实清楚，适用法律正确，结果应予维持的，裁定驳回复议申请，维持异议裁定；  （二）异议裁定认定事实错误，或者适用法律错误，结果应予纠正的，裁定撤销或者变更异议裁定；  （三）异议裁定认定基本事实不清、证据不足的，裁定撤销异议裁定，发回作出裁定的人民法院重新审查，或者查清事实后作出相应裁定；  （四）异议裁定遗漏异议请求或者存在其他严重违反法定程序的情形，裁定撤销异议裁定，发回作出裁定的人民法院重新审查；  （五）异议裁定对应当适用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规定审查处理的异议，错误适用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五条规定审查处理的，裁定撤销异议裁定,发回作出裁定的人民法院重新作出裁定。  除依照本条第一款第三、四、五项发回重新审查或者重新作出裁定的情形外，裁定撤销或者变更异议裁定且执行行为可撤销、变更的，应当同时撤销或者变更该裁定维持的执行行为。  人民法院对发回重新审查的案件作出裁定后，当事人、利害关系人申请复议的，上一级人民法院复议后不得再次发回重新审查。  **第二十四条** 对案外人提出的排除执行异议，人民法院应当审查下列内容：  （一）案外人是否系权利人；  （二）该权利的合法性与真实性；  （三）该权利能否排除执行。  **第二十五条** 对案外人的异议，人民法院应当按照下列标准判断其是否系权利人：  （一）已登记的不动产，按照不动产登记簿判断；未登记的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按照土地使用权登记簿、建设工程规划许可、施工许可等相关证据判断；  （二）已登记的机动车、船舶、航空器等特定动产，按照相关管理部门的登记判断；未登记的特定动产和其他动产，按照实际占有情况判断；  （三）银行存款和存管在金融机构的有价证券，按照金融机构和登记结算机构登记的账户名称判断；有价证券由具备合法经营资质的托管机构名义持有的，按照该机构登记的实际投资人账户名称判断；  （四）股权按照工商行政管理机关的登记和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的信息判断；  （五）其他财产和权利，有登记的，按照登记机构的登记判断；无登记的，按照合同等证明财产权属或者权利人的证据判断。  案外人依据另案生效法律文书提出排除执行异议，该法律文书认定的执行标的权利人与依照前款规定得出的判断不一致的，依照本规定第二十六条规定处理。  **第二十六条** 金钱债权执行中,案外人依据执行标的被查封、扣押、冻结前作出的另案生效法律文书提出排除执行异议，人民法院应当按照下列情形，分别处理：  （一）该法律文书系就案外人与被执行人之间的权属纠纷以及租赁、借用、保管等不以转移财产权属为目的的合同纠纷，判决、裁决执行标的归属于案外人或者向其返还执行标的且其权利能够排除执行的，应予支持；  （二）该法律文书系就案外人与被执行人之间除前项所列合同之外的债权纠纷，判决、裁决执行标的归属于案外人或者向其交付、返还执行标的的，不予支持。  （三）该法律文书系案外人受让执行标的的拍卖、变卖成交裁定或者以物抵债裁定且其权利能够排除执行的，应予支持。  金钱债权执行中，案外人依据执行标的被查封、扣押、冻结后作出的另案生效法律文书提出排除执行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非金钱债权执行中，案外人依据另案生效法律文书提出排除执行异议，该法律文书对执行标的权属作出不同认定的，人民法院应当告知案外人依法申请再审或者通过其他程序解决。  申请执行人或者案外人不服人民法院依照本条第一、二款规定作出的裁定，可以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规定提起执行异议之诉。  **第二十七条** 申请执行人对执行标的依法享有对抗案外人的担保物权等优先受偿权，人民法院对案外人提出的排除执行异议不予支持，但法律、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八条** 金钱债权执行中,买受人对登记在被执行人名下的不动产提出异议，符合下列情形且其权利能够排除执行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在人民法院查封之前已签订合法有效的书面买卖合同；  （二）在人民法院查封之前已合法占有该不动产；  （三）已支付全部价款，或者已按照合同约定支付部分价款且将剩余价款按照人民法院的要求交付执行；  （四）非因买受人自身原因未办理过户登记。  **第二十九条** 金钱债权执行中,买受人对登记在被执行的房地产开发企业名下的商品房提出异议，符合下列情形且其权利能够排除执行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在人民法院查封之前已签订合法有效的书面买卖合同；  （二）所购商品房系用于居住且买受人名下无其他用于居住的房屋；  （三）已支付的价款超过合同约定总价款的百分之五十。  **第三十条** 金钱债权执行中,对被查封的办理了受让物权预告登记的不动产，受让人提出停止处分异议的，人民法院应予支持；符合物权登记条件，受让人提出排除执行异议的，应予支持。  **第三十一条** 承租人请求在租赁期内阻止向受让人移交占有被执行的不动产，在人民法院查封之前已签订合法有效的书面租赁合同并占有使用该不动产的，人民法院应予支持。  承租人与被执行人恶意串通，以明显不合理的低价承租被执行的不动产或者伪造交付租金证据的，对其提出的阻止移交占有的请求，人民法院不予支持。  **第三十二条** 本规定施行后尚未审查终结的执行异议和复议案件，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审查终结的执行异议和复议案件，人民法院依法提起执行监督程序的，不适用本规定。 |